

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

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1. 8. 3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專 門 委 員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

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81호로 2021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사업내용이 우수하여 올바른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선도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
나.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(안 제2조)

다. 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및 지정(안 제3조 ~ 제4조)

라.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(안 제5조 ~ 제6조)

마.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및 지정증 회수(안 제7조 ~ 제8조)

바. 모범사업자 지원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1. 1. 21. ~ 2. 5. / 15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사업내용이 우수하여 올바른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및 공공 복리 증진을 선도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이고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2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및 지정증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9조에서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중 모범사업자를 지정·운영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.
-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, 홍보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, 구민들에게는 질 높은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고 자료

1 자동차관리법

- 제58조의2(모범사업자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

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- 제117조의2(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)** ① 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